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징 수 과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 김영태·안주찬·이명희·이상호
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7인)

1. 개정이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의회 보고 내용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금고 신규지정시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9조

2) 「지방회계법」 제38조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4)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나. 부서검토: 징수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을 “금고취급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지정”을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미시”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의방법”을 “수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약정기간”을 “약정 기간”으로, “기간만료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 중 “경쟁방법”을 “경쟁 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활동기간”을 “위촉 활동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의회 보고) 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 신규 지정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 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호 중 “수의방법”을 “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경쟁방법”을 “경쟁 방법”으로, “참여의사”를 “참여 의사”로, “금고약정”을 “금고 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평”을 “금고 평”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금고평가기준”을 “금고 평가 기준”으로,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약정기간”을 “약정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심의결과”를 “심의 결과”로, “약정기간”을 “약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고약정”을 “금고 약정”으로 한다.

④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을 “(금고 약정의 중도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를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약정 해지”를 “금고 약정 해지”로, “해지통지”를 “해지 통지”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약정기간은”을 “약정 기간은”으로, “약정기간의”를 “약정 기간의”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금고운용 보고)”를 “(금고 운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포함)별 자금운용”을 “(기금 포함)별 자금 운용”으로, “보안관리”를 “보안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을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으로,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를 “금고 운영 및 자금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제7조제3호의 평가결”을 “제8조제3호의 평가결”로,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구미시와”를 “시와”로, “협력사업비”를 “협력 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고약정”을 “금고 약정”으로, “협력사업비”를 “협력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금고취급금융기관---------- ---------- ---------- ----------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구미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 지정 방법)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법--. ---------- ---------- ---------- ---------- 수의방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③ ---------- 약정 기간---------- ---------- ---------- 기간 만료일----.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 ---------- ---------- ----------.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 이하---------- ---------- ----------. <단서 삭제>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 위촉 활동기간----------.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 종료 때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 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

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 --- 관련 서류----------.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1. ---------- 수의 방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경쟁 방법---------- 참여 의사---------- 금고 약정 ----------.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	② ----------

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고평---------- ----------.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 금고 평가 기준---------- ---------- -- 관련 기관---------- ---------- ---------- 약정 기간 ---------- ---.
제10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 ---------- 심의 결과---------- 약정 기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④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현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 금고 약정 ----------.
<신 설>	제12조(의회 보고) 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 신규 지정 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 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 약정의 중도해지 등) ① ----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② ----- 금고 약정 해지---------- 해지 통지 ----------

의견을 청취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약정 기간은 ---------- 약정 기간의 ----------.
제12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기금 포함)별 자금 운용 ---------- 보안 관리 ----------.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고 운영 및 자금 관리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	③ ---------- 지체 없----------

다.	--.
제13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 제7조제3호의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다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제8조제3호의 평가 결---------- ----- 밖의 ---------- ---------- ----------.
제15조(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구미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시와 --------- 협력사업비---------- ---------- ---------- ---------- ---------- ----------.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 금고 약정 --------- ---------- 협력 사업비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징수과

조 례 명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 주요 사항

○ 위원회 구성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금고 신규지정 시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개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민간전문가 과반수, 구미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구체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금고 신규지정 시 의회보고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금고 운영의 안정성·투명성 등 제고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회 보고를 통해 안정성·투명성 확보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